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2
----------	-----

제출년월 : 2024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대통령령 제33159호, 2022.12.27. 공포·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추가(안 제5조)

-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기 간: 2024. 9. 26.~10. 16.(20일간)

- 방 법: 성북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 2)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u></p> <p style="text-align: center;">분</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결정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감사담당관 정포근